

##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변경공고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(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(격리 등의 명령)에 따라 권역화 방역관리 및 ASF 관련 개선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5일

파주시장

- (목적)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 및 확산 차단
- (근거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
- (적용대상) 전국 양돈농장 축산차량 소유자 등
- (적용기간)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
- (주요내용)

적용 대상	주요 명령 내용	비고
축산 차량	<p>4.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(시·군)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,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, 보관</li><li>-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,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,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·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</li></ul> <p>※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</p>	(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- 기타 문의 및 의심신고 파주시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(☎ 031-940-4503)